

#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'22.11.1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5조가 개정됨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경관사업, 경관계획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관계획의 개념 정의에서 수립대상 범위를 “일정지역”에서 “관할 지역”으로 변경(안 제2조제1호)
- 나. 경관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동일 개념임에도 “경관사업자”, “사업자”로 각각 달리 사용 중인 용어를 “경관사업자”로 일치되게 정비(안 제2조제5호, 안 제4조)
- 다. 경관계획의 내용에 야간경관 형성 및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제5호 및 제9호)
- 라. 공청회 제목을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5조와 일치되게 “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”에서 “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”로 정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내용, 발표자 선정 등 세부사항 신설(안 제8조)

- 마.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에 경관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의 타당성,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추가(안 제11조)
- 바. 서울특별시가 현재 「경관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,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「경관법 시행령」 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함 (안 제25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경관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대상아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
검토의견: 의견있음(의견반영)

- 제출부서 :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

- 제출의견 : 개정 조례안 제25조 제1항 신설 및 제2항 수정

- 제출내용 및 검토의견

기존 조례 개정안	공공주택과 검토의견		검토의견 (도시경관담당관)
	수정안	수정사유	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"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	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"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	▶ 조례 제25조제②항의 경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추가 반영 필요	▶ 조례제25조제②항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법령 체계상 제25조 제①항 4호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공주택과 검토의견 적합 (의견 반영)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② (생략) 1. ~ 6. (생략) 7.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: 법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 주택지구조성사업	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6. (생략) 7.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: 법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사항 중 「공공 주택특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	▶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뿐만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른 경관심의를 필요	▶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이외에 공동주택건설사업,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승인 등을 위한 건축물 경관심의를 위해 경관법 제30조제1항제7호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공주택과 검토의견 적합(의견반영)

## 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5. 18. ~ 6. 7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세창(☎2133-1926)

##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같은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경관계획”이란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5. “경관사업자”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
  - 나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  - 다.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위원회(“경관과 관련된 위원회”를 포함한다)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경관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(이하 “경관사업 시행자”라 한다)

제4조의 제목“(경관계획수립권자·사업자·시민의 책무)”를“(경관계획수립권자·경관사업자 등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높여야”를 “높이도록 노력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자”를 “경관사업자”로 한다.

제7조제5호 중 “관리”를 “관리 및 형성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그 밖에”를 “경관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”를“(경관계획의 수립 또

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개최이후”를 “개최 이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”를 “공청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),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

1. 공청회 개최목적
2.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
3.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
4. 발표자에 관한 사항
5.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6. 의견제출 방법
7.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

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. 다만,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연차별”을 “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연차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적절성”을 “적정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유지관리”를 “유지관리 계획, 유지관리”로, “적절성”을 “적정성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13조제2호 중 “경관사업”을 “경관사업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용을”을 “비용의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”를 “설립(변경)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5호 중 “드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

제25조제2항제1호 나목 중 “주택법 제16조”를 “주택법 제15조”로 하고

같은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8.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: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

제26조제1항제3호 후단 중 “된다”를 “말는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3호 중 “해당 지자체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경관형성 및”을 “경관의”로 한다.

제30조제1호 중 “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”을 “위원을 해촉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“심의·의결”을 “심의·의결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관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경관계획</u>“이란 <u>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“<u>경관사업자</u>”란 <u>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자체장,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경관계획</u>”이란 <u>경관을 보전·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경관사업자</u>”란 <u>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<u>중앙행정기관의 장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다. <u>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 대한 경관위원회 (“경관과 관련된 위원회”를 포함한다)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</u></p>





9. 그 밖에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<신 설>

<신 설>

9. 경관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-----

제8조(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)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(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),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.

1. 공청회 개최목적
2.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
3.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

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

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

4. 발표자에 관한 사항

5.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

6. 의견제출 방법

7.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

③ ----- 공청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. 다만,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-----  
-----  
-----  
개최 이후 -----

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)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
2. 사업비 계산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
3.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

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~ 5. (생략)
6. 지방의회 의원

-----  
-----.

⑦·⑧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

제11조(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) -----  
-----  
-----.

1.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연차별 -----
2. -----  
----- 적정성
3. 유지관리 계획, 유지관리 --  
---- 적정성

제12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) ① -----  
-----  
----- 사람 -----  
-----  
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서울특별시의회 -----  
-----

② ~ ⑨ (생략)

제13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2. 경관사업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

제14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- ③ · ④ (생략)

제18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① (생략)

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

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)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경관사업을 -----  
-----  
--

제14조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비용의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 설립(변경)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.

제21조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 ① -----  
-----

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  - 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
- ②·③ (생략)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"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.

- 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  - 가. (생략)
  - 나.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
-----  
-----  
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  - 5. -----  
----- 필요한 -----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경관과 관련된 위원회)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"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1.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
  - 가. (현행과 같음)
  - 나. -----  
----- 「주택법」 제15조-----

및 대지조성사업

2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③·④ (생략)

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·2. (생략)

3.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.

4.·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

2. ~ 6 (현행과 같음)

7.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:

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

8.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: 법

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 
-----  
-----  
-- 말는다.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 
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“지  
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  
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
말한다.

1. 2. 삭제

3. 해당 지자체장이 경관형성을  
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  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  
하는 사항

4. (생략)

5.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 
보전·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  
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0조(경관위원회의 운영 등) 영  
제26조제9항에서 “지방자치단  
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 
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 
있을 때, 정당한 사유 없이 심  
의·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,  
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  
득이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  
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 
해제 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3.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

제29조(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)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3. 시장-----  
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경관의 -----  
-----  
-----

제30조(경관위원회의 운영 등) 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위원을 해촉할 --  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

위하여 경관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본다.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사항을 차기 경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심의·  
의결한 -----  
-----.

#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박세창 (02-2133-1926)